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 투자계약 금지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0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2
2.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4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2.
3. 회부연월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 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III. 검토의견

1.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안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이 펀드운용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생략)	6. -----제5호----- -----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40조제1항¹⁾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로서 ①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제1호), ②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제2호), ③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제3호), ④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제4호),
⑤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78조제1항은 금지 행위를 한 대주주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등 특정 이해관계자가 금전 제공 등을 통해 펀드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대주주 등의 계열사 지원, 특정 투자처 편중 등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발생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품 등 제공·수수를 대주주 등의 행위제한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및 벌칙(안 제52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불

공정한 계약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해당 계약조건을 무효로 하고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u> <u>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u> <u>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u> <u>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u>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u> <u>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u> <u>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u> <u>는 조건</u> <u>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u> <u>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u> <u>니하는 조건</u> <u>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u> <u>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사</u> <u>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범위를 초과하여 투자금액을</u> <u>감액하는 조건</u> <u>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u> <u>지에 준하여 벤처투자 대상</u>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u>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u>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u> 제78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u> ② (현행과 같음)
--	--

안 제52조의2는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①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한 투자금 조기 회수, ② 유예기간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 ③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투자금 감액(Refixing)²⁾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벤처투자에서 리픽싱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전환형 증권의 전환가격을 투자 이후 기업가치 하락이나 저가 후속투자 발생 시 조정하여 투자자의 가치 회석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임.

이와 같은 불공정 투자계약 요건은 「모태펀드 기준규약」에 반영되어 불공정계약으로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나 동 제재는 모태펀드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조건을 벤처투자 일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직접 벌칙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문('26.1.23, 발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배제 가능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 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안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조건 설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초기혁신기업 등 피투자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협상력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78조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체결한 업무집행조합원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주주등에 대한 현행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공정계약 체결행위를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근절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규정 신설 취지에 동의하나, 유사규정(제3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과의 형평성, 불공정 계약체결에 관한 입법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환경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벌칙보다는 행정처분 부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 투자계약 설정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 검사 근거 추가 등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

IV. 참고자료

1

금융관계 법령의 대주주 행위제한 입법례

구분	대주주 행위제한 사항	벌칙
자본시장법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미공개 자료·정보 제공 요구 -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위법행위 요구 - 통상적 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 요구 - 금융투자상품 조사분석자료 작성 과정에 영향력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 금융업법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미공개 자료·정보 제공 요구 -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위법행위 요구 - 통상적 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 요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호저축 은행법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미공개 자료·정보 제공 요구 -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위법행위 요구 - 통상적 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 요구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은행법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미공개 자료·정보 제공 요구 -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신용공여 조기 회수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부당하게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은행의 대주주 주식소유 한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신용공여시 불리한 계약조건 요구 - 공익법인 자산 무상 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2

금전, 물품 등의 제공·수수 금지 입법례

□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1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 4.~6. (생략)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략)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③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2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